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요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에 대해 명시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200조 또는 제203조”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② (생략)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 제200조 또는 제203조----- ----- ----- ----- ----- ----- -----.
제14조(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법 제37조제4항----- ----- ----- ----- ----- ----- -----.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수료)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장이 공고한다.